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3226호

나. 발의자 : 김경 의원 외 9명

다. 발의일자 : 2025년 10월 20일

라. 회부일자 : 2025년 10월 23일

###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역사 연구 활성화 및 시사편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시행 중이며, 이 중 제4조 제3항은 민간위원을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 위원 위촉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던 바(2023. 12. 18. 의결) 해당 내용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민간위원은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 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등교육법」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민간위원을 위촉하고자 발의되었음

#### 나. 민간위원 자격요건 구체화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 12월 「행정·심의위원회 등 운영 합리성 제고」(의결 제2023-988호) 의결을 통해, 행정안전부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을 위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서울특별시는 2024년 12월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정비를 통해, 교육인(교수/학계)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sup>1)</sup>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등으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였음.

- 그러나 시사편찬위원회는 서울역사 연구의 활성화와 시사 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제4조제3항은 민간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여전히 "서울 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불명확한 기준은 위원 선정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어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바,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자격요건에 전공 요건과 경력 요건을 추가하여, 현행의 추상적 기준을 객관적·정량적 기준으로 전환하고자 함.

---

1)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

###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 략)</p> <p>③ 위원은 <u>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u>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p>	<p>제4조(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u></p> <p>-----</p> <p>-----</p> <p>-----</p> <p>-----</p> <p>-----.</p>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조례안은 자문위원회인 시사편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 기준을 구체화하여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함.

또한,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됨.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시행은 서울역사 연구 및 시사 편찬을 심의하는 위원 위촉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검증된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위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성 및 심의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

의안번호  
3226

##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제안자	안건 소관 상임위	규제철폐 안건		
	김 경(대표 발의)	문화체육관광	해당없음		
〈개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제4조제3항은 민간위원을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 위촉하도록 하고 있음.</li> <li>○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민간위원 위촉을 위해 자격요건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했던바(2023.12.18. 의결)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li> </ul>			
〈주요 입법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제3항 조례명 및 조문상의 “서울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대학에서 역사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변경함.</li> </ul>			
추진경과	○'25.10.20. 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부서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 보류( )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내용이 현재 위원회에 미치는 영향 없음 (현재 위원회 구성이 이미 개정안 내용을 적용하고 있음)</li> </ul>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안 내용이 현재 위원회 운영에 미치는 영향 없다고 판단</li> <li>○ 향후 위원회 재구성시('26.6.) 해당 내용 적용</li> </ul>				
상임위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임위 안건처리 후 작성(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보류, 미상정으로 구분) - 수정가결시 수정내용, 부결·보류·미상정시 사유 기재</li> </ul>				
담당부서	서울역사편찬원	팀장	박명호(☎413-9539)		
		담당	심인혜(☎413-9688)		